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전 기 산 업 발 전 기 본 법 시 행 령 제 정 안

2024. 10.

법 제 처 심 사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전기의 생산·공급·판매·중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산업
2. 전기설비의 설계·공사·감리·안전관리·진단에 관한 산업
3.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전력기자재의 설계·제조·판매에 관한 산업
4.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산업이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신산업·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산업과 관련된 부대산업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관련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 그 밖에 전기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을 위한 행사

제2장 전기산업정책의 수립

- 제4조(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⑥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3.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4.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전기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전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분야 사업자 매출실적 및 수출입 현황
3. 전기산업의 고용 현황 및 분야별 사업자·종사자 현황
4. 전기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기술 현황
5. 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6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사업자는 그 출연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전기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전기산업 분야의 교육 실적 및 계획
3. 교육시설·인력·장비의 확보 현황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 계획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류를 적합하지 아니하게 갖춘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5. 법 제10조 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① 지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해의 전기산업 전문인력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 교육인원
3. 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5. 교육 재원조달 방안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기관의 시설, 교육훈련 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에 대한 결과를 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의 개발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3. 교육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

4. 현장 실습 비용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지원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 전문 학회·전시회·국제행사 참가

2.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정보제공·컨설팅

3. 국내 전기산업 관련 해외마케팅·홍보활동

4. 수출하려는 국가의 인허가 취득, 판매·유통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법 제13조제2항에서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기산업의 정보·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모델 개발·확산

2.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그 밖에 전기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방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전기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대학·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 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2. 참여하는 전기기술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수준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3. 전기산업 디지털 전환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제14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전기기술연구기관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의 실시상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의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사업화

2. 전기산업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3. 전기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촉진

4. 전기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5. 그 밖에 전기산업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활동

제16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사업 및 지원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한 전기산업의 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관리,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17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협의체(이하 “전기산업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전기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전기산업 관련 전기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산업 관련 정책·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전기산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전기사업자, 전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산업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제18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에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산업발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 전기산업발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전기산업 정책·제도의 발전방안 강구 및 공동대응
4. 전기산업 진흥 및 위상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홍보
5.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전기산업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19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면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의 50인 이상이 발기하고, 정관을 작성한 후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기관·단체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협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주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 및 협회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기의 날 기념행사의 개최
2. 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지원 업무
3. 법 제8조에 따른 전기산업 실태조사
4. 법 제9조에 따른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사업에 관한 지원 업무
5.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접수에 관한 업무
6. 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한 지원 업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관한 지원 업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산업 기관간 협의체 조직·운영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3.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